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7. 1.(토)

6월 29일 월레비 관련 대법원 판결은 월레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겨레·문화 등, 6.30) >

◆ 타워크레인 월레비 대법 “사실상 임금”(한겨레)

○ 대법원에서 타워크레인 월레비가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

◆ 대법 “타워크레인 기사 월레비”는 임금(경향)

○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월레비 요구가 ‘공갈’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힘 잃어

□ 금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타워크레인 월레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,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.

○ 또한, 추후 월레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,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

□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월레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바 없습니다.

○ 원고 측이 월레비 지급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월레비를 묵시적 계약에 따른 증여로 보았으며,

○ 월레비 지급은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비채변제(민법 제742조)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- 한편,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(근로기준법 제2조)으로 사용자-근로자 사이에 채권·채무관계가 형성되므로 임금의 지급은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- 따라서, 법원은 월레비 지급을 임금 지급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.

□ 정부는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조종사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상 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 면허를 정지하는 한편, 「건설기계관리법」을 개정하여 부당한 금품수수·요구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부당한 월레비 갈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	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	홍 철 (044-201-4990)
			사무관	고명윤 (044-201-3490)